

충청북도중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월 18일

3. 제안이유

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체험, 교육기회 확대등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가. 문화의 집 기능(안 제3조)

- 도서, CD, 비디오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
-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
- 소규모 공연, 전시, 강좌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제공
- 주민 친목 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

나.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(안 제4조)

-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
- 수탁자는 출장소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다. 위탁 운영경비 지원(안 제5조)

-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무상임대

라.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(안 제6조, 제8조)

-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
- 규정위반, 운영능력 부족,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, 계약해지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증평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체험,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증평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,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문화의 집 설치 및 기능,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,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, 수탁자의 의무, 업무감독,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(안)